

연구과제 변경 및 중단 처리절차

연번	구분	심의내용	승인권자	처리절차
1	연구원 변경	연구책임자 변경	원장	1) 연구심의회 ① 심의회 개최 요청 (연구부서 → 지원부서) ※ 단, 사전 원장 보고 必 ② 심의결과 회신 (지원부서 → 연구부서) 2) 원장 ① 변경 보고 (연구부서 → 원장) ② 변경문서 공람(지원부서) 3) 부서장 ① 변경 보고 (연구책임자 → 부서장) ② 변경문서 공람(지원부서)
2		참여연구원 변경	부서장	
3	연구방식 변경	추진방식 변경 (자체, 위탁, 공동)	원장	
4	연구내용 변경	연구 목적 또는 핵심 연구내용 변경	연구심의회	
5		연구과제명 변경	원장	
6		세부 연구내용 변경	부서장	
7	연구예산 변경	30% 초과 증·감액	연구심의회	
8		30% 이하 증·감액	부서장	
9	주관부서 변경	연구 주관부서 변경	원장	
10	연구과제 중단	사고발생 등 주요 문제로 인한 연구과제 중단	연구심의회	
11		연구책임자 퇴직, 사망,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과제 중단	원장	